

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

[기 계 - 특기 시방서]

2026. 07.

목 차

01 BF인증관련 특기사항

01 BF 인증 관련 특기사항

■ BF 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) 인증 관련 특기사항

1. 일반사항

- 가. 본 공사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(BF) 인증 대상사업으로서,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, BF 인증기준, 설계도서 및 BF 예비인증 심사결과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와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, 상호 불일치, 누락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공종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다. BF 인증 관련 사항은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, 조경, 기계, 전기, 통신 등 관련 공종간 연계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2. BF 인증기준 준수

- 가.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BF 인증 관련 시설을 설계도서 및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.
-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
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
 - 출입문 및 복도 등의유효폭
 - 단차 및 경사로
 - 계단 및 손잡이
 - 승강기
 - 장애인이용 가능확장실
 -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
 - 안내시설 및 축지도
 - 객실·관람석·접수대 등 해당 시설별 편의시설
 - 그 밖에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
- 나. 계약상대자는 BF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, 제품, 규격, 설치위치 및 시공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다.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사항은 BF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고, 관련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.

3. 예비 인증 사항의 확인

- 가. BF 예비인증서, 예비인증 심사결과서 및 보완사항은 본 공사의 시공 시 준수하여야 할 자료로 활용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예비인증 심사 시 제시된 조건 및 보완사항 중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다. 예비인증 내용과 설계도면, 시방서, 내역서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

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4. 공사 중 품질관리

- 가.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마감 또는 은폐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나. 출입구 유효폭, 경사도, 단차, 손잡이 높이, 점자블록 위치, 장애인화장실 내부 유효공간 등 완공 후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려운 사항은 시공 전에 현장 실측 및 관련 공종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다. BF 인증과 관련한 주요시공사항은 본 인증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전 •중 •후 사진 및 측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•관리하여야 한다.

5. BF 본인증 업무 협조

- 가. 계약상대자는 준공단계에서 시행하는 BF 본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.
 - 본인증 신청에 필요한 시공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
 - 주요 시설물의 치수 및 설치상태 확인
 - 공사사진 및 시공확인자료 제출
 - 인증기관의 현장심사 및 현장확인 협조
 - 인증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
 - 그 밖에 BF 본인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
- 나.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 현장심사 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공사에 포함된 각종 건축물인증 등의 평가항목별 기준과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, 숙지하여 공사 전반기에 걸쳐 시설물을 적합하게 시공(시공 중 인증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립하여야 한다.)하여야 하며, 공사 완료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득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라. 공사완료 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득절차를 준공 후라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.

6. 보완사항 및 책임범위

- 가.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,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, 승인받지 않은 자재•제품•시공방법의 변경 또는 시공품질 미흡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BF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에 필요한 보완 및 재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- 나. 설계도서의 누락•오류,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변경 또는 BF 인증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시설 또는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검토한 후 관계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.
- 다. BF 인증기관의 보완요구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감독자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,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
7. 준공 전 확인

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 BF 인증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,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BF 인증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BF 관련 시설자체점검표
- 주요 시설별현황사진
- 유효폭•높이•경사도 등 주요 치수 측정자료
- BF 예비 인증보완사항조치결과
- 본인증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
-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

8. 기타

본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,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(BF) 인증기준, 설계도서,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.